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고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명	영업소 위치	청문시간
1	베이프스판 은평점	김○미	은평구 은평로 108. 1층 107호 (응암동)	10:00
2	통일부동산중개사무소	안○희	은평구 연서로 266-1. 우측 첫째호 (불광동)	10:00
3	롯데부동산컨설팅	민○기	은평구 수색로 297. 1층 2호 (수색동)	10:00
4	이사철(247)	엄○우	은평구 통일로 863-20. 2층 (갈현동)	10:15
5	로그	이○훈	은평구 통일로 855-20. 5층 3호 (갈현동)	10:15
6	광이네	이○광	은평구 증산로 413. 104호 (신사동)	10:15
7	베이프럽 전자담배 은평	양○진	은평구 통일로 812 (불광동)	10:15

나. 공고기간 : 2024. 4. 12.(금) ~ 2024. 4. 26.(금)

다. 공고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음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라. 청문 및 의견 제출

- 청문일자 : 2024. 5. 17.(금)
- 청문시간 : 오전 10:00~11:30 사이
- 청문장소 : 은평구청 7층 교육장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마. 기타사항

- 청문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02-351-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